

[특집]

교회의 공동 책임성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교회법적 고찰*

■ 박 정 원

[원주교구 무실동성당 신부]

- I. 들어가는 말
- II. 선교 사명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제기
 1. 교회론: 하느님 백성(Populus Dei)
 2. “친교” 개념
- III. 사목 생활 안에서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1. 「교회헌장」, 10항
 2.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계 연구
 3.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상호보완성
- IV. 공동 책임성과 교구 사목평의회
 1.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성을 위한 요소들
 2. 공동 책임성의 실현: 교구 사목평의회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2023년 10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1회기 개막을 선언하였다.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수의 지역교회에서 여러 교회의 현안들이 제기되었고, 그 안에서 시대적 징표를 읽고,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자 여러 제언들이 피력되었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이들은 이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정신에 관하여 크고 작은 오해를 하곤 하였다. 여러 오해들 중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마치 교회 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프레임으로 받아

들었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 결과 여러 의제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교회라는 인식이 더 팽배해진 듯 이 단어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마치 주문처럼 외우다 시들어 버린 시노달리타스의 참정신은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부터 충분히 고민되었던 과제였으며, 이 숙고의 결과로 이미 1983년 법전에 ‘교구 사목평의회’와 ‘본당 사목평의회’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본 줄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출발하여 ‘사목평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이루어졌던 교회 내 여러 목소리와 시대적 상황 그리고 현행 교회법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목평의회의 정신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이 여정을 통해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는 여정’인 진정한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발을 올려 놓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II. 선교 사명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제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 적극적인 참여와 선교에 구체적인 참여를 실현하고자 사목평의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직후 유럽의 여러 교구는 이 교구 사목평의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많은 기대를 자아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면한 여러 갈등과 그에 따른 실망은 이 교구 사목 평의회에 대한 포기과 체념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삼시간에 이루어진 사목평의회에 대한 기대와 실망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 이 조직의 불명확한 역할과 그에 따른 혼란, 각 지역

1) Cf. A. Montan, “I consigli pastorali. Verifiche e prospettive”, *Orientamenti Pastoralis*, XL VIII(2000), 39-40.

교회의 충분하지 않았던 준비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아내고자 했던 교회 내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미성숙한 인지와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²⁾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초 민주주의가 성행하던 시대적 상황 안에서, 교회 역시 교회 내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공동 결정과 의견 수용을 넓히자는 목소리와 교회 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하자는 필요성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사목평의회를 잘 운용하는지 여부는 평신도들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충분히 수반했는지 여부와 맞물려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빚어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는 ‘성직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목평의회에 여러 의견을 교구 행정 및 운영 지침에 반영하기도 하였다.³⁾ 교구장의 자문기관인 사목평의회를 통해 교구장 사목 운용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아닌 평신도와 성직자가 대척점을 이루며 서로의 목소리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교계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직자 입장에서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신자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교도권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⁴⁾

이처럼 유럽 교회의 실제 역사는 교구 사목평의회에 정체성과 어긋난 길을 걸어왔으며, 시노달리타스의 정신 역시 구현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교회의 역사가 한국 지역교회 내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교회 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오인된 사목평의회에 위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그중 하나는

2) Cf. G. Vecchio, “I laici nella vita della Chiesa”, in *La Chiesa del Vaticano II(1958-1978). Parte seconda*, M. Guasco / E. Guerriero / F. Traniello(eds.), Cinisello Balsamo(Milano), 1994, pp.86-87.

3) Cf. L. Tonello, “Sinodalità e consigli pastorali diocesano e parrocchiale. Prospettiva teologico pastorale”, in *Sinodalità*, R. Battocchio / L. Tonello(eds.), p.154.

4) Cf. A. Montan, *I consigli*, 45.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론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친교”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1. 교회론: 하느님 백성(Populus Dei)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반포된 1917년 비오-베네딕토 법전은 교회를 “불평등 사회”(Societas inaequalis)로 자처하였다. 또한 교회 내 존재하는 신분(status)에 대해 강조하면서, 성직자들을 이 불평등 사회의 지배자/주인공들로 여겼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형성된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은 성 비오 10세 교황의 사목서한 *Vehementer Nos*⁵⁾(프랑스 분리법에 관하여)에서 엿볼 수 있다.

Una società di uomini in seno alla quale si trovano dei capi che hanno pieni e perfetti poteri per governare, per insegnare e per giudicare. Ne risulta che la Chiesa è per sua natura una società ineguale, cioè una società formata da due categorie di persone: i pastori e il gregge, coloro che occupano un grado fra quelli della gerarchia, e la folla dei fedeli. E queste categorie sono così nettamente distinte fra loro, che solo nel corpo pastorale risiedono il Diritto e l'autorità necessari per promuovere e indirizzare tutti i membri verso le finalità sociali; e che la moltitudine non ha altro dovere che lasciarsi guidare e di seguire, come un docile gregge, i suoi pastori.⁶⁾

위 사목서한은 인간들의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판단하며 통치하기 위한 힘을 가진 것처럼 교회 역시 본성상 동등하지 않은 불공정 사회임을 역설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자들과 양들로 구분되기 때문이며, 목자는 교계 제도 안에서의 어떠한 등급을 지닌 자들로 양들인 신자들, 즉 대중들의 집합체를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자처하게 된 배경에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필두로 시작한 종교개혁

5) Pius PP. X, Epistola encyclica ad Archiepiscopos Episcopos universumque clerum et populum Galliae: *Vehementer Nos*, 11 februarii 1906, in *ASS*, XXXIX(1906), pp.3~16.

6) *Ibid.*, pp.8-9.

과 관련이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교회는 개신교 신학과 쏟아지는 비판 등에 대항하기에 급급했고, 가톨릭교회의 대답은 “교계제도”의 권한 자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⁷⁾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 중 교계제도와 관련하여,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를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이며, 이 사회의 기틀인 교계제도는 바로 하느님에 의한 설립(*Institutio Divina*)에 기반을 둔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가톨릭교회는 봉건적 신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교회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성직자를 두었다. 이렇게 성품성사의 존엄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가톨릭교회는 일반 사제직에 대한 연구와 평신도 신학에는 소홀하였고, 평신도들의 존재 가치 또한 성직자들 사목의 수여자(대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⁸⁾

20세기 초, 평신도들의 사회 내에서의 실질적인 선교 역할, 특별히 사회-정치적 역할에 대한 교회 내 시각이 조금씩 변화되었다.⁹⁾ 이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가톨릭 운동 및 신자들의 단체)의 성공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평신도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복음화의 활동이 교회 안팎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¹⁰⁾ 그 결과 1930년에서 1950년 사이 평신도를 주제로 한 신학(일반 사제직, 교회 내 선교 사명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새로이 고찰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교회는 혁

7) Cf. G. Leonardo, *L'esercizio della corresponsabilità nella nuova parrocchia*, Reggio Calabria, 2009, p.24; A. Del Portillo, “Los derechos de los fieles”, *Ius Canonicum*, XI(1971), 77-78.

8) Cf. V. De Bari, *Il consiglio pastorale. Nuove prospettive dopo 50 anni del Concilio Vaticano II*, Roma, 2020, pp.21-22.

9) Cf. I. Zuanazzi, “La corresponsabilità dei fedeli laici nel governo ecclesiale”, in *Il governo nel servizio della comunione ecclesiale*, Coll. *Quaderni della Mendola*, 25, G.I.D.D.C.(ed.), Milano, 2017, p.109.

10) 교황 비오 10세의 회칙 「확고한 목적」(*Il fermo proposito*)에서 가톨릭 운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Cf. Pius PP. X, *Litteræ encyclicæ: Il fermo proposito*, in *ASS*, XXXVII(1904-1905), pp.741-767].

신의 바람이 불게 된다. 즉, 더 이상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모두 하느님 백성(*populus Dei*)으로 재정립되었으며, 「교회헌장」은 평신도의 역할과 교회 내 위치에 대해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과 “그리스도의 삼중직무”(tria munera Christi)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도 확언한다.¹¹⁾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평신도들만이 지닌 특별한 소명과 평신도 신학,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 어려움은 결국, 모든 신자들(성직자, 평신도)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사도직이 그대로 평신도의 고유한 사도직인 것처럼 반복 기술되었다는 점¹²⁾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직무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참여”뿐만 아니라 교회 공적인 직무(*ministerium*¹³⁾ 또는 *officium*¹⁴⁾)를 통한 교회 내 삼중 직무(tria munera)를 수행하게 된다(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참여와 삼중 직무에 참여는 다르다). 이는 또다시 보편 사제직(평신도 사도직)과 직무 사제직이 하나의 공동 사명인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안에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¹⁵⁾ 실행되는 방향으로 향하기보다는, 여전히 직무 사제직의 권한 밑에 평신도 사도직이 종속되는 하위 범주의 사도직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빚어낸다. 보다 직

11) 「교회헌장」은 30항에서부터 32항까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평신도의 품위에 대해 역설한다. 이후 33항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이며, 모든 이는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34항부터 36항까지는 평신도 “그리스도의 삼중직무”에 대해서 기술한다.

12) 이에 대해 이탈리아 신학자 Dario Vitali는 「교회헌장」 34항을 주석하면서, 「교회헌장」 제2장 하느님 백성에서 이미 기술된 보편사제직의 내용이 제4장 평신도 34-36항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예로 든다(Cf. D. Vitali, *I laici*, in *Commentario*, S. Noceti / R. Repole(eds.), p.340).

13) 참조: 교회법 207조 1항, 252조 1항, 255조, 324조 2항, 385조, 499조, 506조 1항, 509조 2항, 545조 2항, 548조 2항, 553조 2항, 559조, 899조 1항, 1008조, 1041조, 1051조 1항, 1740조.

14) 참조: 교회법 145조.

15) 참조: 교회법 145조.

설적인 표현으로, 직무 사제직의 직무(임무)는 고귀하고 높은 차원에서, 평신도 일반 사제직에 임하는 이들의 임무는 마치 낮은 차원의 영역에 배치되어 두 층으로 갈리게 된 것이다.¹⁶⁾

한편, 1980년대 이후 몇몇 공산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구성이 “하느님 백성”(populus Dei) 카테고리 불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같은 단어인 “백성”(populus)을 사회적 의미의 “군중”으로 덮어씌우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하느님 백성 카테고리는 교회에서 마치 민주화를 주창할 수 있는 표어로 오인되어 사용되었다.¹⁷⁾ 그 결과, 가톨릭교회는 왜곡된 이미지로 오염된 “하느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제쳐둔 채 “친교”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그 결과 1985년 세계 주교 시노드 비정례회합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의 중심을 “친교”로 천명하였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이것이다: “l’ecclesiologia di comunione è l’idea centrale e fondamentale nei documenti del Concilio.”¹⁸⁾ 번역하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문헌들의 중심적이고 근원적인 생각이 친교의 교회론에 있다. 이렇게 세계 주교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다양한 교회론을 친교의 교회론으로 수렴시키게 된 것이다.¹⁹⁾

종합하자면, 보편 사제직이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과 직무 사제직이 마치 각기 다른 층을 이룬 상태에서 친교의 교회론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낮은 차원에 있는 평신도 사도직은 높은 차원에 있는 직무 사제직의 직무 권한과 “친교”²⁰⁾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태

16) Cf. I. Zuanazzi, “La corresponsabilità”, p.110.

17) Cf. V. De Bari, *Il consiglio*, p.32.

18) Synodus Episcoporum, Relatio finalis: *Ecclesia sub verbo Dei mysteria Christi celebrans pro salute mundi*, 7 decembris 1985, in *L’Osservatore Romano*, CXXV(1985), 7 dicembre, 6-7.

19) “Che cosa significa la complessa parola comunione? Si tratta fundamentalmente della comunione con Dio per mezzo di Gesù Cristo nello Spirito Santo. Questa comunione si ha nella Parola di Dio e nei Sacramenti. [...] Pertanto, l’ecclesiologia di comunione non può essere ridotta a pure questioni organizzative o a problemi che riguardano semplicemente i poteri. Tuttavia, l’ecclesiologia di comunione è anche fondamento per l’ordine della Chiesa e soprattutto per una corretta relazione tra unità e pluriformità nella Chiesa”, *Ivi*, 7.

20) 진정한 친교의 의미가 아닌 수동적 입장에서 성직자의 입장과 노선을 따라간

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평신도들은 교회의 선교 사명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며, 책임성에 있어서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한 때 “교회 내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견에 밀어 두었던 “하느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함을 피력하는 바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헌장」, 8항에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²¹⁾

위 언급처럼, 교회의 본성은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la natura teandrica*)²²⁾가 “온전히” 존재하며, 어느 한 요소도 다른 한 요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듯, 교회 역시 영적인 신비체이며 동시에 교회법적 체계로 교계 제도를 갖춘 실재(가시적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교회헌장」은 피력한 것이다.²³⁾

사실 교회는 카리스마(은사)적인 실재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갖춘 하나의 사회임을 포괄하기 위해 “하느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바 있다. 교회법 제2권(하느님 백성)의 시작인 204조 1항은 교회의 카리스마적 실재를 설명하면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받은 세례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다는 의미에서의 친교를 뜻한다.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AAS*, LVII(1965), pp.5-75], 8항.

22)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키기 위한 형용사로 쓰이며, 후대 희랍 교부 위-디오니시오가 쓴 표현(Θεανδρικὴ ἐνέργεια)에서 이 단어(*teandrico*)를 발견할 수 있다.

23) Cf. P. Gherri, *Lezioni di teologia del Diritto canonico*, Roma, 2004, p.229; P. Gherri, *Teologia del Diritto canonico. Lezioni introduttive*, Roma, 2020, pp.94-96, 103-106.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됨을 드러낸다. 즉,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은사(카리스마적)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았음을 가장 먼저 기억한다.

한편, 204조 2항은 교회가 무엇보다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적 아래 제도를 갖춘 가시적 집단, 즉 하나의 사회 안에 기능적으로 몇몇 구별되는 역할이 존재해야 함을 다음의 말로 명시한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²⁴⁾

이러한 교회의 카리스마적·제도적 면모를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바라본다는 대전제 아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공동 선교 사명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으며, 각자의 고유한 은사(카리스마적)에 따른 사도직과 직무(제도적)에 따른 사도직도 하나의 선교 사명이라는 일치된 목적하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2. “친교” 개념

앞서 필자는 평신도 사도직과 직무 사제직 사이의 “친교”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이 “친교”는 성직자의 뜻에 이끌려 가며 이루어지는 사목 활동의 행태가 진정한 의미의 친교가 아님을 역설하였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친교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답하기 위해 교회의 문헌에서 언급한 진정한 의미의 친교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친교” 개념은 교회가 지난 다채로운 면모를 아우르면서도 이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채택한 단어이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0-80년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많은 이들이 “친교”의 개념을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해

24) 교회법 204조 2항.

로 교회를 바라보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수직적인 교계 구조 안에서는 교회가 친교를 이룰 수 없다며 수평적인 구조만을 주장하기도, 심지어는 교계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²⁵⁾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직면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몇몇 문헌과 교황청 신앙 교리부 문헌 *Communio Notio*(교회의 어떤 측면들에 대한 친교 개념)를 중심으로 “친교”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문헌에서 “친교”라는 단어는 여러 헌장, 교령, 선언 등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²⁶⁾ 「사목헌장」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²⁷⁾로, 「선교교령」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communionis hominum)²⁸⁾을 드러내기 위해 기술된 바 있다. 한편, 「교회헌장」에서 이 “친교”는 교회 내 성직자 사이의 일치성을 뜻하기 위해 쓰였다. 즉, 사제들 사이의 친교²⁹⁾ 혹은 교황과 주교들의 친교³⁰⁾ 등이다. 「일치교령」에서 *communio*는 “신자들의 친교”³¹⁾와 “교회 일치”³²⁾로 해석되었는데, 여기서 각각 친교와

25) Cf. J. Ratzinger, “Alcuni aspetti della Chiesa intesa come comunione”, in *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per la missione. Un contributo teologico e pastorale*, Pontificie Opere missionarie(ed.), Roma, 1997, p.60.

26) Cf. X. Ochoa, *Index verborum cum documentis Concilii Vaitcani secundi*, Roma, 1967, pp.90-91.

27) “인간 존엄성의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AAS*, LVIII(1966), pp.1025-1120], 19항.

28) “교회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거나 그 사회에 파견된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현존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살아가든 삶의 모범과 말의 증거로 세례를 통하여 입은 새 사람을 드러내고 견진을 통하여 굳세게 해 주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인간 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 공동체의 보편적인 유대를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Divinitus*)[*AAS*, LVIII(1966), pp.947-990], 11항.

29) “공통된 성품과 사명의 힘으로 모든 신부는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되며, 이 형제애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루어지는 영성적이고 물질적인 상호 원조로, 사목적이고 개인적인 도움으로 생활과 활동과 사랑의 모임과 친교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교회헌장」, 28항.

30)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 「교회헌장」, 8항.

일치는 모두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제 생활 교령」에서 이 단어는 교계 제도 안에서의 친교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사제 교역은 바로 교회의 직무이므로 오로지 몸 전체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³³⁾

교황청 신앙 교리부는 친교라는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 내 여러 기준들과 측면들을 기술한 문헌 *Communiois Notio*³⁴⁾을 공포한다. 이 문헌에 따르면, 친교 개념은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여러 문헌들에서 이미 기술된바, 교회의 핵심적인 신비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한 단어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톨릭 교회의 혁신된 교회론을 드러내는 중심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별히 1980년대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잘못 해석 및 오용되던 친교 개념을 정정하기 위해 친교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세밀히 고찰한다.

이 문헌에서 첫 번째로 꼽는 친교의 한 측면은 바로 ‘신비’로서의 교회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라는 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친교(교계적 친교³⁵⁾, 부부의 영신적 친교³⁶⁾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일치, 삼위일체의 신비)를 아우르기 위해 쓰일 수 있는 단어임을 역설한 것이다. 두 번째로, 위 문헌은 친교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상호내재성이라는 특별한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실 보편교회뿐만

31) “믿는 이들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께서는 온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다스리시어 신자들의 저 놀라운 친교를 이루시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합시키어, 교회 일치의 원리가 되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AAS*, LVII(1965), pp.90~112], 2항.

32) “그러나 갈라진 형제들도 그리스도를 교회 일치의 원천과 중심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기뻐한다.” 「일치교령」, 20항.

3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AAS*, LVIII(1966), pp.991~1024], 15항.

34)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Litterae ad catholicae Ecclesiae Episcopos de aliquibus aspectibus Ecclesiae prout est communio: Communiois Notio*, in *AAS*, LXXXV(1993), pp.839~850.

35) Cf. *Can.* 333 §2, 336.

36) Cf. *Can.* 1124.

아니라 개별교회 역시 “온전한 교회”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보편교회뿐만 아니라 개별교회 역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가톨릭교회의 네 가지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연결 고리가 상호내재성(*mutua interioritas*)이다. 문헌 *Communio Notio*는 이 상호내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친교”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⁷⁾ 게다가 보편교회와 개별교회를 사이에서의 친교는 성체성사라는 공통된 뿌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같은 원리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 보편교회와 개별교회는 일치(친교)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교회헌장」의 사전 설명 주석 *Nota Explicativa Prævia*³⁸⁾에 따르면, “친교” 개념은 어떠한 감정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용어**로 해석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친교는 고대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특히 동방교회에서처럼) 크게 존중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막연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형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유기체적 실재’로 이해되어야 한다.³⁹⁾

이 기술을 바탕으로 교회법 학자인 Agostino Montan은 친교 개념을 교회법적 의미에서 재분석한다. 이 학자에 따르면, 교회는 결코 신자들이 속세적인 기준과 이해관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집단 혹은 단체나 동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한다. 즉, 교

37) 교회법 36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서 존립한다.” 이를 통해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상호내재성을 언급하는데, 이 상호내재성(*mutua interioritas*)을 *Communio Notio*에서는 친교라는 단어로 풀어낸다. “In order to grasp the true meaning of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term communion to the particular Churches taken as a whole, one must bear in mind above all that the particular Churches, insofar as they are part of the on Church of Chris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of mutual interiority with the hole, that is, with the universal Church, because in every particular Church the on,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of Christ is truly present and active.”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Communio Notio*, n.9.

38) *Secretarius generali ss. Concilii, Notificatio: Nota Explicativa Prævia*, 16 novembris 1964, in *AAS*, LVII(1965), pp.72~73.

39) *Ibid.*, p.73.

회의 구성원들은 오직 세례성사⁴⁰⁾와 성체성사⁴¹⁾ 안에서만 그 친교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을 지향하는 모든 이의 참여라는 공동 사명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을 수 있고, “친교”의 핵심을 이루게 되며, 더 나아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교” 개념이 바탕을 이루게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전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교의 공통된 참여와 구원을 향한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일치-친교를 이룰 수 있게 된다.⁴²⁾ 따라서 복음과 복음 선포는 어느 특정 주체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친교를 이루는 교회에 맡겨진 “공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동의 숙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하느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귀결되는 결론과 같이, 참 친교를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는 또다시 교회법 제204조 1항에서 적시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며, 바로 그 안에서 친교를 이루게 되고 이 친교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선교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

40)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교회법 204조 1항.

41) “지성한 성찬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교회법 897조.

42) Cf. A. Montan, *Responsabilità ecclesiale, corresponsabilità e rappresentanza*, in *Responsabilità ecclesiale, corresponsabilità e rappresentanza*, P. Gherri(ed.), Città del Vaticano, 2010, pp.16-17.

건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III. 사목 생활 안에서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선교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이 책임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교회헌장」, 11항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 “사제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사제 공동체는 각각의 개별 신자들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로 합체함으로써 이루어진 친교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이를 아우르는 하느님 백성 전체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자면, 각각의 신자들은 하느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사제 공동체의 주체가 되며,⁴³⁾ 이 사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갈림 없는 하나의 사제직에 참여하기에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해 「평신도 교령」 사도직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⁴⁴⁾

이처럼 사제 공동체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갈림 없는” 하나의 사제직 수행을 통해 선교 사명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 선교 사명의 출발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예수님의 파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43) Cf. J. P. Beal / J. A. Coriden / T. J. Green,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New York, 2000, p.260.

4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AAS, LVIII(1966), pp.837~864], 2항.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⁴⁵⁾ 이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신 말씀을 토대로 설립된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인 것이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위 말에서 일반 사회와 결이 다른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기는 하지만, 결코 사람들의 원의가 취합되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집합 혹은 단체가 아니다.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로 모인 모임 혹은 일반 사회는 때와 장소에 따라 구성원 각자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역사와 문화, 환경에 따라 현상학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다수결의 논리 혹은 민주적 절차에 따르며, 그 목적 역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두고 있다.⁴⁶⁾

반면 교회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고, 이 파견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역사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 안팎으로 빚어지는 여러 변화들을 대응하며 교회의 틀을 제도화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선교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⁴⁷⁾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 “이미”⁴⁸⁾ (역사 안에서 전통적으로 규정된) 정향되어 있는 여러 객관적인 요소와 제도들에 각 개별 존재가 자유의지로 참여할 때, 변화할 수 없는 공동선과 목적인 “복음 선포와 구원”의 도정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⁴⁹⁾

45) 마태 28장 19-20절

46) Cf. P. Gherri, *Introduzione al Diritto amministrativo canonico. Fondamenti*, Milano, 2015, pp.83-84.

47) Cf. *Ibid.*, pp.75-76.

48) Cf. M. J. Arroba Conde, *Diritto processuale canonico*, Roma, ⁷2020, p.28.

49) Cf. P. Gherri, *Introduzione*, p.85.

정리하자면, 교회는 영적 신비를 지켜 온 하나의 공동체(친교)이며,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 틀과 제도를 갖춘 하나의 사회(하느님 백성)이다.⁵⁰⁾ 그러므로 개별 신자는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 이미 규정된 기준에 따른 역할(*suo modo et sua parte*)을 수행하며(직무 사제직/보편 사제직), 이 모든 목적은 “복음 선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하나의 공동 목표인 선교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다수인 평신도들이 취하는 보편 사제직의 사도직 역할은 제한적인 반면, 소수인 성직자 신분이 수행하는 직무 사제직은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이 어떻게 해야 상호보완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가 평신도입니다. 소수인 성품 직무자가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평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세례와 견진에서 비롯되는 평신도의 이러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평신도를 의사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로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말하고 활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가 평신도 봉사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가 흔히 교회 안의 임무에 머물고 말아, 복음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육과 더불어 직업과 지적 생활의 복음화는 중요한 사목적 도전

50) Cf. P. Erdö, *Teologia del Diritto canonico. Un approccio storico-istituzionale*, Torino, 1996, p.46.

을 제기합니다.⁵¹⁾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의 상호보완성을 고취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수인 평신도의 책임과 역할을 고양시켜야 하는 사목의 고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짚은 것이다.

이러한 사목적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계를 서술한 「교회헌장」, 10항에 대한 과정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한 두 학자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상호보완성에 대해 언급한 교회법 208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 「교회헌장」, 1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구원으로 모든 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 하나의 공동 사명인 선교라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동시에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이 서로 다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⁵²⁾

「교회헌장」의 첫번째 초안(*de Ecclesia*)의 21항(*de sacerdotio universali et de sacerdotio ministeriali*)⁵³⁾에서는 직무 사제직에 여러 역할에

51) 교황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AAS*, CV(2013), pp.1019-1137], 102항.

52) 「교회헌장」, 10항.

53) “N. 21 [De sacerdotio universali et de sacerdotio ministeriali]. Antiquus Populus Dei ut ‘regnum sacerdotale et gens sancta’ constitutus est(Cf. *Es* 19,5-6), cuius membra ‘sacerdotes Domini’ vocarentur(Cf. *Is* 61,6). In Christo autem novus populus in templum spirituale et sacerdotium sanctum per regenerationem baptismalem et Spiritus Sancti unctionem evehitur, ut spirituales offerat hostias, et tamquam genus electum, regale sacerdotium, gens sancta, populus

대해 언급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보편 사제직 (sacerdotium commune)은 sacerdotium universale으로 명명되었으며, 직무 사제직이 아닌 이들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였다. 「교회헌장」 초안 2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Alterum autem alterum non elidit, sed e contra sacerdotium ministeriale et sacerdotium universale, quia non gradu tantum, sed etiam essentia differunt, suo peculiari modo a summo sacerdote Christo profluunt, et ita ad invicem respiciunt, ut primum potestate sacra regnum sacerdotale diffundat et dirigat, alterum vero ad oblationem sacrificii concurrat et in oratione, testimonio, abnegatione et actuosa caritate exerceatur.⁵⁴⁾

한편, 1963년 9월 30일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헌장」의 두 번째 스케마(*Schema Constitutionis dogmaticae de Ecclesia*)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 스케마 내에서는 제3장 하느님 백성(*De Populo Dei et speciatim de laicis*) 내 24항(*de sacerdotio universali, necnon de sensu fidei et de charismatibus christifidelium*)은 초안의 21항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

Cum autem sacerdotium ministeriale seu hierarchicum essentialiter et non gradu tantum a sacerdotio universali christifidelium differat, hoc et illud tamen suo peculiari modo a summo sacerdotio Christi profluunt, et ad invicem ordinantur.⁵⁵⁾

이 두 번째 스케마의 24항에 대해 공의회 교부들의 많은 토론이 이어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주교 회의와 독일계 교부들은 “tantum”이라는 단어를 생략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acquisitionis, virtutes annuntiet Eius qui de tenebris eum vocavit in admirabile lumen suum(Cf. *I Pr* 2,4~10). Ideo universi discipuli Christi, quos ipse Dominus regnum et sacerdotes Deo et Patri suo fecit(Cf. *Ap* 1,6; 5,9~10) sive ad hierarchicum ordinem pertineant sive non, seipsos ut hostiam viventem ac Deo placentem exhibeant(Cf. *Rm* 12,1), et testimonium praebent ubique terrarum de Christo Eiusque virtutibus.”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 I/IV*, Città del Vaticano, 1971, p.38.

54)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I/IV*, p.39.

55)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II/I*, p.258.

들의 왕직과 직무 사제직의 왕직은 단순히 다르지만, 이 둘 사이에 정도의 비교를 명확한 척도로 구분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⁵⁶⁾, “tantum”이라는 단어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교부 Paolo II Cheikho는 보편 사제직무에 대한 명확한 교의 내용 혹은 설명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하였는데, 그 저변에는 평신도들의 직무 참여가 교계 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기 때문이다.⁵⁷⁾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교의 현장 준비 위원회에서는, 여러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antum” 단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Paolo II Cheikho의 발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겼다: “doctrinam iam matura et in Encyclica Mediator Dei exhiberi. Si proponitur sicut revera est, non datur periculum ingerentiae.”⁵⁸⁾ 즉, 이 보편 사제직무에 대한 교리는 이미 충분히 숙고되었고, 비오 12세의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에도 실린 바 있으므로, 교계 제도에 간섭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종 「교회현장」, 10항에는 비오 12세의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Mediator Dei*)⁵⁹⁾와 훈화 *Magnificate Dominum*⁶⁰⁾이 첨부된 것이

56) *Ibid.*, pp.331~332.

57) “Deinde neminem fugit doctrinam declarandam in hoc sacrosancto Concilio Vaticano II clarum et certum esse debere. Propterea quaestiones quae nondum maturae sunt, aut praetermitti aut clarius declarari oportet, ne in futuro contrariae interpretationes oriantur et praesertim apud fideles. Inter quaestiones huius generis reputo esse illam de sacerdotio universali. Haec quaestio, maximi momenti, indiget clara explanatione ne aperiatur porta ingerentiae laicorum in rebus ad solam hierarchiam unice spectantibus.”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 II/III, Città del Vaticano, 1972, pp. 222~223.*

58)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III/I, p.194.*

59) “Hanc autem restricti nominis oblationem christifideles suo modo duplicique ratione participant: quia nempe non ‘tantum’ per sacerdotis manus, sed etiam una cum ipso quodammodo sacrificium offerunt: qua quidem participatione, populi quoque oblatio ad ipsum liturgicam refertur cultum.” 비오 12세, 회칙 *Mediator Dei*, 1947.11.20, in *AAS, XXXIX(1947), p.555.*

60) “At quaecumque est huius honorifici tituli et rei vera plenaque significatio, firmiter tenendum est, comune hoc omnium christifidelium, altum utique et arcanum, [sacerdotium] non gradu ‘tantum’, sed etiam essentia differre a sacerdotio proprie verequedicto, quod positum in potestate perpetrandi, cum persona Summi sacerdotis Christi, ipsius Christi sacrificium.” 비오

다.

한편, 공의회는 많은 교부들은 *universale* 대신 *inchoativum*⁶¹⁾, *spirituale*⁶²⁾, *commune*⁶³⁾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Padre D. Nežić의 의견에 따라 “*commune*”로 결정하였다. 단어 “*commune*”가 제시된 다른 단어들(*inchoativum*, *spirituale*)보다는 모든 신자들에게 일반적 성격으로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단어라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commune*라는 단어는 모호함을 지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 성사를 근거로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제직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⁶⁴⁾

1964년 「교회헌장」의 세 번째 스케마에서는 21항에서 10항(*de sacerdotio communi*)으로 옮겨졌으며, 그 내용의 원문을 인용하면 다

12세, 훈화 *Magnificate Dominum Mecum*, 1954.11.2., in *AAS*, XLVI(1954), p.669.

61) “[Regale sacerdotium], de quo Petrus in prima epistola, cap. II, vers. 9, loquitur, est regale sacerdotium Populi Dei, [universale] quidem, de quo scil., omnia membra Corporis Christi mystici, quod est Ecclesia, participant, quod quidem est vere et proprium sacerdotium quod summum et aeternum sacerdotium ipse Christus Iesus, per participationem, in terris perpetuae instituit. Tamen, cum sacerdotium fidelium a [ministeriali] certo distinguatur, rectius — saltem mihi videtur — [sacerdotium inchoativum] diceretur relate ad [ministeriale], cum ambo eiusdem sacerdotii Christi Iesu distincti modi participationis sint. Inchoatur quidem sacerdotium baptisate, in omnibus fidelibus.”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II/III, pp.173~174.

62) “Ad evitandas confusiones et notiones erroneas, distinctio inter sacerdotium hierarchicum et sacerdotium omnium fidelium [tam ex clero quam ex laicatu] clare definienda est. Sed verba [ministeriale] et [universale] nec in se nec ad distinctionem inter utramque exprimendam apta esse videntur. Eorum ergo loco, velim suggerere alia verba, nempe [sacramentale] et [spirituale], ita ut sacerdotium hierarchicum vocetur [sacerdotium sacramentale] et sacerdotium omnium fidelium [sacerdotium spirituale].” *Ibid.*, pp.152~153.

63) “Terminus [sacerdotium univemale] mutetur potius in [sacerdotium commune]. [Sacerdotium univemale] non rectis interpretationibus ansam dare potest. [Sacerdotium commune] commendatur ex rationibus sequentibus: agitur de re omnibus membris Ecclesiae communi, tum simplicibus fidelibus tum membris hierarchiae; actuari nequit nisi in communione ecclesiastica, [agitur enim de populo sacerdotali], dum sacerdotium hierarchicum, saltem in quibusdam [sacrificium missae] actuari potest etiam quando sacerdos separatus est a communioine ecclesiastica.” *Ibid.*, p.511.

64) “Dicatur commune, ad vitandam ambiguitatem. Universale enim significat quod universa complectitur. Potest tamen etiam indicare illud quod omnibus competit.”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III/I, p.195.

음과 같다.

Sacerdotium autem commune fidelium et sacerdotium ministeriale sive hierarchicum ad invicem ordinantur; unum vero et alterum suo peculiari modo de uno Christi sacerdotio participant. Essentia enim et non gradu tantum inter se differunt. Sacerdos quidem ministerialis, potestate sacra qua gaudet, populum sacerdotalem efformat ac regit, sacrificium eucharisticum conficit illudque nomine totius Populi Deo offert; fideles vero, vi regalis sui sacerdotii, in oblationem Eucharistiae concurrunt, illudque in Sacramentis suscipiendis, in oratione et gratiarum actione, testimonio vitae sanctae, abnegatione et actuosa caritate exercent.⁶⁵⁾

113회기 전체 회의에서 교부들은 이 세 번째 수정안에 대해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중 두 가지만이 채택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unum vero et alterum suo peculiari modo de uno Christi sacerdotio participant”와 그 다음 문장인 “Essentia enim et non gradu tantum inter se differunt” 두 문장의 위치 변경이다. 그 이유는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의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essentia et non gradu tantum differant*)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함⁶⁶⁾이었다. 다른 하나는 *sacrificium eucharisticum conficit*에서 “*in persona Christi*”(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을 삽입할 것을 요청⁶⁷⁾하였다. 이러한 수정 결과들은 최종 문헌에 수정 및 삽입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오늘날 「교회헌장」, 10항의 내용에 이르게 되었다.

2.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관계 연구

「교회헌장」, 10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65) *Ibid.*, p.183.

66) “Transponantur haec verba ad lin. 17, hoc modo: ‘sacerdotium autem commune fidelium et sacerdotium ministeriale seu hierarchicum, licet essentia et non gradu tantum differant, ad invicem tamen ordinantur; unum enim et alterum suo peculiari modo de uno Christi sacerdotio participant.’ Resp.: haec correctio stylistica placet.” *Archivium Concilii (E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III/VI, p.96.*

67) “Addatur: ‘sacrificium eucharisticum in persona Christi conficit, illudque nomine totius Populi Deo offert.’ Resp.: admittitur. Ita clarius patet diversitas utriusque sacerdotii.” *Ibid.*

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한 이탈리아 교의 신학자 D. Vitali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직무 사제직은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는 직무이다. 만약 이 상관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으로, 즉 성직 중심 주의 교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⁶⁸⁾ 그는 특별히 「교회헌장」에 나온 표현 “*ad invicem*”(서로에게)에 주목하면서 하나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두 가지 형식(보편 사제직, 직무 사제직)의 상호호혜적 관계(reciprocity)를 통해 교회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이에 덧붙여, 보편 사제직의 근원인 세례성사와 직무 사제직의 성품성사는 성사의 정도(*gradus*)가 결코 상위 혹은 하위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이 두 성사를 등급에 따라 나누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의미가 기능적으로 또한 존엄적 의미에서도 축소되는데, 사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다는 점을 피력한다.

한편, 교회법 학자 Èmilio Kouveglo는 이 두 사제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세례성사의 존엄성과 성품성사의 존엄성 모두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제직 소명의 직무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 다시 말해, 보편 사제직무이든 직무 사제직무이든 각 성사들의 존엄성과 은총이 결코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⁶⁹⁾ 정리하자면, 세례성사의 존엄성이 교회에서 제정한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처럼 직무 사제직무도 교회에서 제정한 제도와 그 형식에 기원을 두고 있고, 이 역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Èmilio Kouveglo는 두 성사의 정도(*gradus*)의 차이를 설명한다. 직무 사제직은 세례성사를 통해 드러나는 보편 사제직무보다 더 근원적인 그리스도의 본질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 백성을 “위

68) Cf. D. Vitali, “Sacerdozio comune e sacerdozio ministeriale o gerarchico. Rilettura di una questione controversa”, *Rassegna di Teologia*, LII(2011), 41.

69) Cf. È. Kouveglo, “I fedeli laici e l’esercizio della potestà nella Chiesa. Status quaestionis e ricerca di una chiave funzionale di lettura”, *Apollinaris*, LXXXX(2017), 227-228.

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며, 이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본질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한편, 보편 사제직무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 안에 합체되고, 이 보편 사제직무의 봉사는 하느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Emilio Kouveglo의 주장에 따르면, 보편 사제직무와 직무 사제직무 사이에 그 어떤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기 위한 다른 두 가지 봉사의 형태일 뿐이고, 단지 두 성사의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3.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상호보완성

교회법 20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⁷⁰⁾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건설에 임하는 협력은 “상호보완성”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모든 신자들이 수행하는 고유한 사도직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평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 평등을 “동일함”(혹은 획일)으로 해석한다면 교회 내 상호보완적 관계를 결코 이룰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조항에서의 평등은 교회의 제도적 구조의 신적·성사적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진 구분을 존중하며,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라는 문장과 함께 해석할 때에 올바른 의미를 띤다. 왜냐하면 ‘신자’는 ‘시민’이 아니며, 교회 내 ‘직분’은 ‘권력’이 아니고, ‘교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⁷¹⁾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많은 신자들이

70) 교회법 208조.

71) Cf.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Città

주장했던 차별에 대한 비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된다. 즉, 신자들이 교회가 아닌 사회의 시각과 관념으로 민주주의적인 절차 및 여러 기능을 교회 내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거나 혹은 직무 사제직의 봉사 직무를 마치 사회 기관이 지닌 권력 내지는 힘으로 오해한 바 있다. 그러나 Emilio Kouveglo는 평등과 획일성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교회 내 직분의 구분이 차별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가한다.⁷²⁾

앞서 숙고한 바 교회는 고유한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되고 정향된 하나의 영적 공동체 사회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건설과 선교라는 데에는 공동 책임성을 지니고 모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고유한 목적(그리스도의 몸 건설과 선교)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장려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제정한 성사에 근거한 구분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의 조화로운 통합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된다.

성령께서는 또한 복음화하는 교회 전체를 다양한 은사로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이는 교회를 쇠신하고 건설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잘 보관하도록 한 집단에게 맡겨져 가두어 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의 몸에 통합되어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복음화의 동력이 됩니다. 참다운 은사의 확실한 표징은 교회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곧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의 삶에 조화롭게 통합되는 그 역량에 있습니다.⁷³⁾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상호보완성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은사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방안으로 교구 사목평의회를 이미 제언한 바 있다.

del Vaticano, 2013, p.178.

72) Cf. É. Kouveglo, “I fedeli”, 223~226.

73)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30항.

날이 갈수록 인구 유동이 증대되고, 상호관계가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해짐에 따라, 사회의 어느 부분도 이제는 저만이 폐쇄된 채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느님 백성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필요할 경우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교구 사목평의회를 설치할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실제로 교구 차원에서 이러한 기구는 협력과 대화와 식별을 위한 기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고도 확고한 방법으로 적용된다면, 이 참여는 협의의 수단과 협력의 원칙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 결정의 방법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⁷⁴⁾

교구 사목평의회와 평의회가 능력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구원의 선익을 성직자들로부터 받는 수동적 존재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역할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 역시 구원의 선익을 평신도에게 주는 존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의 선익을 세상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때로는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줄 수 있게 된다.⁷⁵⁾ 이 과정에서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보완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이 지나친 기능주의 혹은 사목의 효율성만을 따지는 위험을 경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더욱 익히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같은 원리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려는 의식과 더불어 교리 교육과 신앙과 관련된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⁷⁶⁾

7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1998.12.30.)[AAS, LXXXI(1989), pp.393~521], 25항.

75) Cf. F. Coccopalmerio, *La parrocchia tra Concilio Vaticano II e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nisello Balsamo(Milano), 2000, p.46.

76) Cf.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Orientamenti pastorali dell'Episcopato italiano: Comunicare il Vangelo in un mondo che cambia, 29 giugno 2001*, in *Notizi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XXXIV(2001), pp.164-165.

IV. 공동 책임성과 교구 사목평의회

교회법 211조에서는 하느님 백성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 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⁷⁷⁾ 이 법 조항에서 언급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이를 일컫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례 성사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선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의무이자 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건 각자의 “구체적인 삶”에서 고유한 “신앙 감각”을 통해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삶” “신앙 감각” “사도직 활동”이라는 하느님 백성의 공통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할 것이며, 이 세가지 선교의 요소들이 구현될 수 있는 교회 내 평의회, 교구 사목 평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1. 하느님 백성의 공동 책임성을 위한 요소들

1) 구체적인 삶

「교회헌장」, 31항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신도의 세속적 성격이 복음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하여 자기 삶의 증거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 주게 된다.⁷⁸⁾

77) 교회법 211조.

78) 참조: 「교회헌장」, 31항.

이러한 「교회헌장」의 선언에 기초하여, 교황청 교회법전 개정 위원회는 평신도들의 특성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세속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주요한 임무이며 동시에 책임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었다.⁷⁹⁾ 그 결과 교회법 225조는 평신도들의 세속적인 성격이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복음화를 이루는 장소가 구체적인 삶을 언명한다.

교회법 225조 1항은 평신도들의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포함하며, 하느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⁸⁰⁾ 물론 이 법 조항이 기술하는 복음화의 의무는 보편 사제직무의 소명으로써 주어진 도덕적 의무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기에 결코 강요될 수는 없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법 조항이 교회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세상에서의 역할을 구분짓지 않는다는 점이다.⁸²⁾ 실제로, “온 세상 어디서나”라는 표현을 통해 평신도들에게 인정된 사도직이 교회 안에서(ad intra)와 각자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즉 교회 밖에서(ad extra)도 수행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교회법 225조 2항은 평신도들의 특별한 의무에 대해 기술한다.

79) Cf.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Acta Commissionis*, in *Communicationes*, XVIII(1986), p.351: “In canonibus huius Codicis, nomine laicorum intelleguntur omnes christifideles, iis exceptis qui, Ordine sacro recepto, ad ministerium divinum sunt deputati aut qui in Instituto ab Ecclesia sancito statum religiosum assumpserunt, christifideles scilicet, sive viri sive mulieres, qui in saeculo viventes et vitae saecularis consortes missionem Ecclesiae salvificam pro parte sua, etiam canonibus determinanda, exercent, videlicet vitam divinam Ecclesiae participantem, atque fidem quam a Deo per Ecclesiam receperunt verbo et opere confitentes ac propagantes, specialiter in rebus temporalibus gerendis et in muneribus saecularibus exercendis Christi testimonium reddentes.”

80) 교회법 225조, 1항.

81) Cf. J. I. Arrieta(ed.), *Codice di Diritto canonico e leggi complementari*, 2004, Roma, p.199.

82) Cf. A. Montan, *Lezioni di Diritto canonico II. Il Popolo di Dio*, Roma, 2000, pp.36-37.

즉,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의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즉 보편 사제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복음화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목현장」 43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세속의 직무와 활동은, 비록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신도들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평신도들은 세상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때에 각 분야의 고유한 법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⁸³⁾ 물론, “성직자-교회: 평신도-세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식이 성립되지는 않지만(성립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체적인 삶” 안에서의 복음화는 평신도의 특별한 의무로 할당된다. 그 결과 226조와 227조는 평신도들의 특화된 복음화 영역에 대해 기술한다. 즉, 교회법 226조는 혼인과 가정에 대해, 227조는 사회이다.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성직자 측에서의 공동 책임성 역시 요구되는 바이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복음화의 특별한 사명을 지닐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일은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의 선교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요청들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며 때로는 비평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해석과 계획을 수립하여 복음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2) 신앙 감각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직무에 참여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의 신앙의 내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의 인식을 선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모든

83) 「사목현장」, 43항.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개별적인(personal) 능력을 신앙 감각이라고 한다. 한편, 이 신앙 감각을 결코 사적(individual) 능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적 실재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감각과 맞닿아 있을 때에 온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신자들이 지닌 복음에 대한 감각은 교회 안에 주어진 믿음이라는 유산과 함께 내적인 연결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청 국제 신학 위원회의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진리의 확고한 은사를 받은 주교직의 후계자들이 지닌 교도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행사하는 진리의 직무이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진리이신 성령의 기름부음 받아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갖추고 있다. 교회 전체가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느님 백성이 복음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닌 교도권은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강화하고 양성할 의무가 있다. 물론 교도권을 행사하는 이들, 곧 교황과 주교들 자신들도 우선 하느님 백성인 세례 받은 이들에 속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공유한다.⁸⁴⁾

따라서, 이 신앙 감각은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실재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개별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s)이다. 이 신앙 감각은 성령의 은총으로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사이다. 한편, 이러한 개별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신앙 교리나 그리스도교의 실천 요소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세례 받은 이들의 합의에서 드러나며, 이 합의가 교리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의 유산에 속하면서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fidelium)이 된다. 이 두 번째 신앙 감각의 주체는 교회이며, 교회 자체의 고유한 신앙 본질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된다.

개별 신자들의 신앙이 믿음의 주체인 교회의 신앙에 함께하듯이,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 또는 성령께서 부여하

84) 교황청 국제 신학 위원회, 「교회 생활 안에서의 신앙 감각」, CIBC, 2014, 76항.

시고 힘을 주시는 ‘교회의 감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신자들의 합의’(consensus fidelium)는 개별 교리나 실천이 사도 전승과 부합하는 지를 식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된다.⁸⁵⁾

이처럼 각 개별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참된 신앙을 그 대상으로 삼을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빚어지는 신앙 감각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여러 의견들 혹은 특정 문화적 상황의 좁은 한계에 빠져 있는 오류 등과 뒤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⁸⁶⁾ 그렇기에 교회는 “합의”를 이루어 낼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는 메커니즘만을 따르지 않는다. 풀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모임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인 어느 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은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교계적 질서”와 “교도권의 해석”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⁸⁷⁾ 이러한 맥락 안에서 개별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교도권의 검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식별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참된 신앙 감각이 대중적인 의견들이나 특정한 관심 또는 시대정신의 단순한 표현들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⁸⁸⁾ 바로 이 지점에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식별”의 공동 책임성이 제기되는데, 이 식별은 개별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효과적인 복음화와 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도구가 적합한지,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교회적 방식(공의회, 시노드)으로 묻는 것이다.

85) 같은 글, 66항.

86) 참조: 같은 글, 55항.

87) Cf. P. Gherri, “Consultare e consigliare nella Chiesa”, *Apollinaris*, LXXXVIII(2015), 605-606.

88) 참조: 교황청 국제 신학 위원회, 「교회 생활 안에서의 신앙 감각」, 87항.

3) 사도직 활동

교회법 216조는 모든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 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⁸⁹⁾ 이 조항에서 언급된 “참여”는 의견 개진과 초안 작성, 제안, 평가, 식별, 프로그램화 과정 모두에 해당된다. 즉, 모든 신자들의 참여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유기적이면서도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교회의 활력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참여를 일컫는다.⁹⁰⁾ 이에 대해 평신도 교령 「사도직 활동」에서도 “하느님 백성”인 모든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은 공동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평신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결합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받는다.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결합되고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튼튼해진 평신도들은 바로 주님께 사도직을 받았다. 평신도들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영적 제물을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왕다운 사제로, 거룩한 겨레로 축성되었다. 모든 사도직의 생명인 사랑은 성사 특히 성체성사로 전달되고 자라난다. [...]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다.⁹¹⁾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주어진 사도직 임무와 관련하여, 교회법 212조는 세 가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89) 교회법 216조.

90) Cf. G. Gervasio, “Il consiglio pastorale diocesano, strumento di comunione nella Chiesa particolare”, in *Partecipazione e corresponsabilità nella Chiesa, i consigli diocesani e parrocchiali*, M. Rivella(ed.), Milano, 2000, p.231.

9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항.

그리스도교적 순명이다. 두 번째 원칙은 신자들이 영적 필요와 청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이며, 마지막 원칙은 교회의 선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목자들에게 표시해야 할 의무와 권리와 관련된다.

교회법 212조 1항은 목자들이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이 조항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임무를 지닌 목자들의 적법한 교회법적 권한만을 강조하기 위해 공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들이 그리스도의 몸 건설과 일치라는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 요구되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⁹²⁾

교회법 212조 2항은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자유는 교회 공동체 내에 속한다는 그 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신자들의 표명된 의견이 실현되어야만 하는 법적인 집행력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⁹³⁾ 이 조항은 신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목자들의 “책임성”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거룩한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기꺼이 그들의 현명한 의견을 참작하고, 신뢰로써 그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남겨 주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이 제기하는 계획과 요청과 열망에 어버이다운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지상 국가에서 누리는 정당한 자유를 목자들은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⁹⁴⁾

마지막 조항인 212조 3항은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룬다. 그리고 이 권리는 의무가 되기도 하는데, 교회의 선익이 이를 요구할 때이거나 각 개인의 개입이 어떠한 상황을 더욱 정확

92) Cf. Redazione di Q.D.E.(ed.),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ato*, Milano, ⁴2017, p.231.

93) Cf. *Ivi*, 232.

94) 「교회현장」, 37항.

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복음 정신에 더욱 충실해지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때에 그렇다.⁹⁵⁾ 또한 212조 3항은 모든 신자들이 교회의 선익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할 자유를 선사하면서도, 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라는 의무이자 권리가 오히려 교회의 선익을 해할 가능성을 견지하며 다음의 단서 조항을 언급한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⁹⁶⁾

종합하자면, 212조 3항은 교회 선익을 위한 의견 표명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한 제한도 언급하는데, 그 자유에 대한 의무와 권리, 제한 모두 교회법 내에서 교회의 선익을 위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공공 사회의 시민의 의견, 정부 권력을 지지하거나, 결집 혹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 혹은 발언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⁹⁷⁾

2. 공동 책임성의 실현: 교구 사목평의회

교구 사목평의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 하나의 평의회로 교구 사목 방침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맡긴 사명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평의회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동 책임성의 세 가지 요소,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 “신앙 감각” 그리고 “다양한 사도직 활동”이 교구 사목평의회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을 반영하기 위해 교구 사목 평의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또 교회법전에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으로 이 신앙 감각의 교류가 바로 교구 사목평의회 주 역할과

95) Cf. Redazione di Q.D.E.(ed.), *Codice di Diritto*, p.189.

96) 교회법 212조 3항.

97) Cf. P. Valdrini, *Comunità*, pp.188-189.

관련되는데, 개별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어떻게 교구 사목평의회에서 공동체적 식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백성이 지닌 고유한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다양한 사도직 활동이 교구 사목 방향 아래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곧 교구 사목평의회 기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1) 구체적인 삶의 반영: 교구 사목평의회 구성

교회법 512조 1항은 교구 사목평의회 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직자들,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 특히 평신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느님 백성의 부분이지만 전체(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한편, 512조 2항은 사목평의회 구성원을 위촉하면서 교구 내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여러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 등을 참작할 것을 촉구한다. 즉, 교구 사목평의회는 교구 내에 하느님 백성의 여러 구체적인 삶을 반영할 수 있고, 지리적·사회적·직업적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가교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이 전체가 되도록 하는 대표성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만약 교구 사목평의회가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교구 내 각 지역, 사회, 직업 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선출은 평의회 구성이 아니라 마치 “대의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로 변질될 것이다. 교황청 성직자부의 “사목평의회”에 대한 회람 「모든 그리스도인」(*Omnnes Christifideles*), 7항에 보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er quanto concerne la composizione del consiglio pastorale, sebbene i membri di questo consiglio non si possano dire rappresentati in senso giuridico dell'intera comunità diocesana, conviene tuttavia che esso si offra nei limiti del possibile come una certa immagine o un segno di tutta la Diocesi [...]. Perciò le persone che vengono deputate al consiglio pastorale siano scelte in modo da rappresentare veramente tutta la porzione del Popolo di Dio che costituisce la Diocesi.⁹⁸⁾

해석하자면, 이 회람은 교구 사목평의회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법적인 의미에서 전체 교구 공동체를 대표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이 구성원들이 가능한 모든 교구의 어느 정도의 이미지 혹은 상징적인 대표성을 띠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목적 평의회에 지명된 사람들은 교구를 구성하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이지만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법 학자 Patrik Valdrini는 512조 2항에 쓰인 단어 *deputantur*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라틴어 *deputatio*는 “선출된” 구성원들이 교구의 전체를 대표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보다 쉬운 표현으로, 이 *deputatio*는 어떠한 집단에 속한 이들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며 인원을 구성하는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교구 자체의 대표성을 드러내기 위해 “뽑힌” 것임을 강조하는 단어인 것이다.⁹⁹⁾ 같은 입장에서,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인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평의회는, 엄밀히 말해서 신자들을 대표하지는 않더라도, 개별교회를 구성하는 하느님 백성 전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¹⁰⁰⁾

이처럼 교구 사목평의회는 그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 교구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띠어야 하며, 또한 이 대표성을 바탕으로 할 때에 이 평의회는 교구 내 여러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512조는 엄정한 단어 선택을 통해 법률적 혹은 실질적 대표성이 아닌 상징적인 대표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하느님 백성의 부분이지만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될 것을 촉구한 것이다.

98) Sacra Congregatio Pro Clericis, Litterae circulares: *Omnes Christifideles*, 25 ianuarii 1973, in *Enchiridion vaticanum*, IV, Bologna, 1978, pp.1196-1211, n.7.

99) Cf. P. Valdrini, *Comunità*, p.76.

100) 교황청 주교부,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 CBCK, 2008, p.218, n.184.

2) 공동 식별을 위한 기구인 사목평의회

식별은 어떠한 판단을 검증하기 위한 숙고의 과정에서 무엇이 적합한지를 구별하고,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선별하고 선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 중 하나이다. 또한 식별의 과정에서 타인 의견을 경청하고 참작한다면 식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합리적인 선택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식별은 신앙적인 판단이라는 기준이 더 요구된다. 신앙적인 판단은 합리성만을 좇는 사회적 기준과 구분된다. 이를테면, 성령계 대한 순종과 하느님 뜻에 대한 겸손함 추구, 복음에 비취 시대의 징표를 해석, 형제적 대화에서 타인의 여러 은사의 가치를 존중, 문화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창의성을 연구하는 가운데 영적이며 선교적인 소재가 무엇인지 판별,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의견들 중 어떠한 의견이 복음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한 이후 목자의 최종적인 결정에 순종하는 자세까지를 아우른다.¹⁰¹⁾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환경 안에서 빚어진 여러 의견들 중 무엇이 교회의 선익에 적합한지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회의 공동 식별은 단순히 의견을 취합하며 자문을 구했다는 법적 형식만을 취하는 데 있지 않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오히려,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지닌 교회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 의견들이 복음의 정신에 부합할 때에는 참조 및 수용함으로써 교회는 진정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

교구 사목평의회는 바로 이 공동 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구 사목평의회는 주 역할은 하느님 백성이 복음과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

101) Cf.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Nota pastorale dell'Episcopato italiano: *Con il dono della carità dentro la Chiesa*, 10 giugno 1996, in *Notizi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XXXI(1996), pp.171-172.

대적 징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법 511조에서는 교구 사목평의회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지는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¹⁰²⁾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지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앞서 언급한바, 교구 사목평의회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같은 조건 내지는 힘, 의결권을 지닌다는 인식은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목평의회역의 성격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어떠한 집단이 아니며, 일반 시민 사회의 전형적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교구 사목평의회역은 주교의 권위 아래 하느님 백성의 본질적인 특성에 온전히 부응하는 역동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각 지역별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공동 식별을 거치면서 복음화를 이루는데 발생하는 견해의 차이와 불일치를 극복하고자 힘써야 한다.¹⁰³⁾

3) 다양한 사도직의 접점: 교구 사목평의회

교회 안에는 사도직 단체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단체는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특별히 복음화와 세상의 성화를 그 목적으로 삼으며, 어떤 단체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어떤 단체는 자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도 한다.¹⁰⁴⁾ 또한 사도직 활동의 형식 역시 다양하다. 어떤 단체는 평신도 자체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도권과 책임까지 수반하며, 또 다른 단체들은 교도권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도직 활동을 하기도 한다.¹⁰⁵⁾ 어떠한 단체는 신자들이 각 개별 주

102) 교회법 511조.

103) Cf. G. Gervasio, “Il consiglio”, p.232.

104)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19항.

105) 교회법 216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체로서 제안 및 구현 단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단체는 하나의 대표 혹은 대리인으로 중재자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의 사도직은 교도권에 의해 사도직 활동이 권고되는 경우도 있다. 즉, 관할권자로부터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특별한 책임을 맡는 영적인 목적을 지닌 단체의 활동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교회의 관할권자는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사도직의 원칙과 영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 실천을 체계화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평신도 교령 「사도직 활동」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개인이든 단체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워 주신(사도 20,28 참조)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계가 적절히 조정하여 한다.¹⁰⁶⁾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과 적절한 조정이라는 교구장 주교의 책임은 교회법 394조 1항과 2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항: 주교는 교구 내에 여러 가지 사도직 방식을 권장하고, 또한 교구 전역에서나 특정 구역에서 모든 사도직 활동들이 각기 고유한 성격은 보존하면서도 그의 통솔 아래 조정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2항: 신자들이 각자의 신분 조건과 적성대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장소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도직 사업들에 참여하고 돕도록 신자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교구장의 이러한 교회법적 책무는 교구 사목평의회와 밀접히 맞닿아 있다. 즉, 어느 한 지역교회인 교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평신도 사도직이 교구장인 주교 한 사람에 의해 조정되기 위해서

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10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23항.

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장소에서만 하느님 백성 모두가 공동 식별을 통해 교구 사목 방침에 따라 여러 사도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법 512조 2항은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사목평의회를 구성할 것을 명확히 기술한다. 이처럼 교구 사목평의회는 여러 사도직 활동들이 협력과 조정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며,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교의 사목 방향과 여러 사도직 활동이 협력을 이루어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할 수 있는 평의회이다.

V. 나가는 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한정된 재화 혹은 그 무엇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향한 도정 위에 있으며, 각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발을 올려놓음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는 예로부터 교회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제도적인 면모를 구축하였고, 여러 신비와 성사를 교회법적으로 제정하였다. 교회법 208조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 성사의 힘으로 존엄성과 행위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교회법에서 명시하는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맡겨진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 몸의 건설에 다르게 참여한다.¹⁰⁷⁾

그러므로 진정한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의 첫 출발점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도가 “지배자-피지배자”라는 과거의 대조적 인식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르지

107) 교회법 208조.

만 각자가 고유한 조건에 따라 교회의 복음화에 “공동 책임성”을 띠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과거 인식의 잔재가 남아 있는 채로 교구 사목평의회를 운용하게 된다면, 교회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을 시노달리타스로 인식하는 오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진정한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서로의 “다른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이 주교의 권위 아래 “조정”될 수 있는 장으로서 교구 사목평의회라는 제도적인 틀을 예전부터 마련하였다. 즉,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인 하느님 백성 모두가 모여 교회의 공동선과 복음화를 위해 연구하는 교구 사목평의회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사목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할 뿐만 아니라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대해 교구 신자들이 공동 책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떠한 교구에서 교구 사목평의회가 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면, 그 교구는 친교와 공동 책임의 실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교회 문헌

교황 문헌

Pius PP. X, Litteræ encyclicæ: *Il fermo proposito*, in *ASS*, XXXVII(1904-1905), pp.741~767.

_____, Epistola encyclica ad Archiepiscopos Episcopos universumque clerum et populum Galliae: *Vehementer Nos*, 11 februarii 1906, in *ASS*, XXXIX(1906), pp.3~16.

교황 비오 12세, 회칙 *Mediator Dei*, 1947.11.20, in *AAS*, XXXIX(1947), pp.521~600.

_____, 훈화 *Magnificate Dominum Mecum*, 1954.11.2., in *AAS*, XLVI(1954), pp.666~67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Codex Iuris Canonici*,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II promulgatus, in *AAS*, LXXV(1983), II, pp.1~320(현행 교회법전)

_____,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1998.12.30.[*AAS*, LXXXI(1989), pp.393~521].

교황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AAS*, CV(2013), pp.1019~1137].

교황청 문헌

Sacra Congregatio Pro Clericis, Litterae circulares: *Omnes Christifideles*, 25 ianuarii 1973, in *Enchiridion vaticanum*, IV, Bologna, 1978.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Litterae ad catholicae Ecclesiae Episcopos de aliquibus aspectibus Ecclesiae prout est communio: *Communione Notio*, in *AAS*, LXXXV(1993), 839~850.

교황청 주교부,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위한 지침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 CBCK, 2008.

교황청 국제 신학 위원회, 「교회 생활 안에서의 신앙 감각」, CBCK, 20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AAS*, LVII(1965), pp.5~75].

_____,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 Redintegratio*][AAS, LVII(1965), pp.90~112].
- _____,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AAS, LVIII(1966), pp.1025~1120].
- _____,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Divinitus*)[AAS, LVIII(1966), pp.947~990].
-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AAS, LVIII(1966), pp.991~1024].
- _____,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AAS, LVIII(1966), pp.837~864].
- Secretarius generali ss. Concilii, Notificatio: *Nota Explicativa Prævia*, 16 novembris 1964, in *AAS*, LVII(1965), pp.72~73.

기타

- Synodus Episcoporum, Relatio finalis: *Ecclesia sub verbo Dei mysteria Christi celebrans pro salute mundi*, 7 decembris 1985, in *L'Osservatore Romano*, CXXV(1985), 7 dicembre, pp.6~7.
- Archivium Concilii Œcumenici Vatican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 I/IV, Città del Vaticano, 1971.
- Archivium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 II/I, Città del Vaticano, 1971.
- Archivium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 II/III, Città del Vaticano, 1972.
- Archivium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 III/I, Città del Vaticano, 1973.
- Archivium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ed.),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Œcumenici Vaticani II*, III/VI, Città del Vaticano, 1975.
-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Orientamenti pastorali dell'Episcopato italiano: *Comunicare il Vangelo in un mondo che cambia*, 29 giugno 2001, in *Notizi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XXXIV(2001).
-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Nota pastorale dell'Episcopato italiano: *Con il dono della carità dentro la Chiesa*, 10 giugno 1996, in *Notiziario de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XXXI(1996).
- Communicationes*, XVIII(1986).

2. 단행본

- Arrieta, J. I.(ed.), *Codice di Diritto canonico e leggi complementari*, Roma, 2004.
- Arroba, Conde M. J., *Diritto processuale canonico*, Roma, ⁷2020.
- Beal, J. P. / Coriden, J. A. / Green, T. J.,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New York, 2000.
- Coccopalmerio, F., *La parrocchia tra Concilio Vaticano II e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nisello Balsamo(Milano), 2000.
- De Bari, V., *Il consiglio pastorale. Nuove prospettive dopo 50 anni del Concilio Vaticano II*, Roma, 2020.
- Erdö, P., *Teologia del Diritto canonico. Un approccio storico-istituzionale*, Torino, 1996.
- Gervasio, G., “Il consiglio pastorale diocesano, strumento di comunione nella Chiesa particolare”, in *Partecipazione e corresponsabilità nella Chiesa, i consigli diocesani e parrocchiali*, Rivella, M.(ed.), Milano, 2000.
- Gherri, P., *Lezioni di teologia del Diritto canonico*, Roma, 2004.
- _____, *Teologia del Diritto canonico. Lezioni introduttive*, Roma, 2020.
- _____, *Introduzione al Diritto amministrativo canonico. Fondamenti*, Milano, 2015.
- Leonardo, G., *L'esercizio della corresponsabilità nella nuova parrocchia*, Reggio Calabria, 2009.
- Montan, A., *Responsabilità ecclesiale, corresponsabilità e rappresentanza*, in *Responsabilità ecclesiale, corresponsabilità e rappresentanza*, Gherri, P(ed.), Città del Vaticano, 2010.
- _____, *Lezioni di Diritto canonico II. Il Popolo di Dio*, Roma, 2000.
- Ochoa, X., *Index verborum cum documentis Concilii Vaitcani secundi*, Roma, 1967.
- Ratzinger, J., “Alcuni aspetti della Chiesa intesa come comunione”, in *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per la missione. Un contributo teologico e pastorale*, Pontificio Opere missionarie(ed.), Roma, 1997.
- Redazione di Q.D.E.(ed.),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ato*, Milano, ⁴2017.
- Tonello, L., “Sinodalità e consigli pastorali diocesano e parrocchiale. Prospettiva teologico pastorale”, in *Sinodalità*, Battocchio, R. / Tonello, L.(eds.).
- Valdrini, P.,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Città del Vaticano, 2013.
- Vecchio, G., “I laici nella vita della Chiesa”, in *La Chiesa del Vaticano*

II(1958-1978). Parte seconda, in Guasco, M. / Guerriero, E. / Traniello, F.(eds.), Cinisello Balsamo(Milano), 1994.

Vitali, D., *I laici*, in *Commentario*, Noceti, S. / Repole, R.(eds.).

Zuanazzi, I., “La corresponsabilità dei fedeli laici nel governo ecclesiale”, in *Il governo nel servizio della comunione ecclesiale*, G.I.D.D.C.(ed.), Coll. Quaderni della Mendola, 25, Milano, 2017.

3. 정기간행물

Del Portillo, A., “Los derechos de los fieles”, *Ius Canonicum*, XI(1971), 68-93.

Gherri, P., “Consultare e consigliare nella Chiesa”, *Apollinaris*, LXXXVIII(2015), 593-616.

Kouveglo, É., “I fedeli laici e l’esercizio della potestà nella Chiesa. Status quaestionis e ricerca di una chiave funzionale di lettura”, *Apollinaris*, LXXXX(2017), 207-229.

Montan, A., “I consigli pastorali. Verifiche e prospettive”, *Orientamenti Pastoralis*, XLVIII(2000), 29-57.

Vitali, D., “Sacerdozio comune e sacerdozio ministeriale o gerarchico. Rilettura di una questione controversa”, *Rassegna di Teologia*, LII(2011), 39-60.

하나의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 아래에서 형성된 **교회론**은 다른 여타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완전한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교회의 본질과 기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자기이해만을 전달하였으며, 교회 내 존재하는 여러 풍요로운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부들은 교회의 제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은사의 풍요로움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교회론을 모색하였다. 비록,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최대한 여러 개념들을 통해 교회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개념이 “하느님 백성”과 “친교”이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0~1980년대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는 민주주의로 점철되었으며, 교회 역시 “하느님 백성”(Populus Dei)이라는 교회론이 같은 단어인 민중(populus)으로 등치되어, 잘못된 교회론을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구 사목평의회는 마치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오인되었으며, 이에 반작용으로 교회의 성직자들은 “교구 사목평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목평의회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평신도들은 사목평의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목 활동에 관한 “**공동 책임성**”을 지니기는커녕, 교회 생활에 점점 더 수동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 수동적인 입장의 견지는 사목 활동과 평신도의 실생활 사이에 더 많은 간극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줄고는 교구 사목평의회에 대한 교회법적 연구를 통해 평신도 신자들의 실제 생활과 사목 활동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이 평의회가 사목 활동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장소임을 피력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에 대해 먼저 연구할 것이며, 이 교회론에 대한 연구는 평신도(보편 사제직)와 성직자(직무 사제직) 사이의 관계 정립이 상호보완성으로 나아가는데 기초를 놓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상호보완적 관계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복음화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교구 사목평의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 주제어: 하느님 백성, 친교, 교구 사목평의회, 공동책임성, 보편 사제직무, 직무 사제직무